

보람찬어르신센터 20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성년후견인 등의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 ② **계약대상** : 계약 대상자는 장기 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이다.
- ③ **계약기간**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서비스 개시일로 지정하고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만료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 활동 등과 같은 생업의 이유로 노인 부양과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 및 대상자에게 재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 노인에게 일상생활 행동과 수단적 일상생활 행동의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을 통하여 해당 노인이 AIP(Aging in Place)를 기반한 안정적인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년 1월 1일 기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9,930
240분이상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와 9%

< 장기요양보험법 제 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제40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 >

제40조 (본인부담금)

-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1>
 -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17, 2018.3.27, 2018.12.11, 2021.12.2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8.3.27, 2018.12.11, 2021.12.21>
- [제목개정 2018.12.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률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감경하므로 100분의 60감경자의 재가급여 공단부담률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94이고, 100분의 40감경자의 재가급여 공단부담률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91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참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해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비용수납 방법: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KB국민 9-2222-6588-50 예금주:‘보람찬어르신센터’)로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후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⑥ 이용자의 책임이행

1. 시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⑧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